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

심사보고서

1997. 12. 29.
시민보사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년 11월 21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7년 11월 24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1997년 12월 23일 제53회(정기회) 제13차 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가. 제안이유

- 안양천 유역에 자리잡은 남서지역 9개 지방자치단체가 안양천 및 지류하천의 수질개선 등 지역환경보전 사업을 공동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를 구성, 규약을 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제안함.

나. 주요골자

-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구성 - 9개 시·구
-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수질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
- 하상 퇴적물 준설, 안양천 살리기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 기타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유재한)

본안의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한다」 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 자연환경의 파괴와 훼손으로 인하여 산하 하천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현실에 우리구를 경유하는 안양천은 9개 지방자치단체에 인접하여 흐르고 있는 하천으로서 주민에게 직접 영향이 미치고 있는 수질오염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으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이며, 이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제144조 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자치단체간에 협의를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 협의회 규약(안)

의안 번호	152
----------	-----

제출년월일 : 1997. 11. 21.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안양천 유역에 자리잡은 남서지역 9개 지방자치단체가 안양천 및 지류하천의 수질개선 등 지역환경보전 사업을 공동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를 구성, 규약을 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제안합니다.

2. 본 협의회 규약의 주요내용

가.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구성

1) 구성범위 :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광명시, 의왕시
(9개 시·구)

2) 추진사업

가)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나) 수질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다) 하상 퇴적물 준설에 관한 사항

라) 안양천 살리기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마) 기타 협의회가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42조

나. 예산조치 : 향후 협의회 사업계획에 의거 별도 예산편성

다. 합의사항 : 이견없음.

라. 기 타 : 규약(안) - 별첨. 끝.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 협의회 규약(안)

제1조 (목적) 안양천 유역에 자리잡은 서울 남서지역과 경기도의 자치단체들이 환경오염 대응체제 및 환경보전을 위한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양천 수질개선 및 기타 지역 환경 보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협의체의 명칭은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 소속 자치단체에 둔다.

제4조 (구성) 협의회의 구성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강서구청장·구로구청장·금천구청장·영등포구청장·동작구청장·관악구청장과 경기도 광명시장·의왕시장을 위원으로 한다.

제5조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③ 간사는 회장 소속 자치단체의 관련 실·국장으로 한다.

제6조 (회장의 선출) 회장은 매년도 첫 번째 정기회의시 선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7조 (회장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인수인계) 회장이 변경될시 전임회장은 후임회장에게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 일체를 인계하여야 하고 후임회장은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회장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개최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토록 한다.

③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안양천 수질개선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종합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의개최 15일 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회장은 안건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무협의회에 안건을 회부한다.

⑤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관계 공무원이 협의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10조 (기능)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①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수질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③ 하상 퇴적물 준설에 관한 사항

④ 안양천 살리기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추진에 관한 사항

⑤ 기타 협의회가 지역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의결) ①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관계 공무원이 회의에 대신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의결권을 가진다.

제12조 (회의록 작성)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제출요구)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시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① 협의회는 상정 안전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관련 실·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정된 안전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배석,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의 간사로 하며, 실무협의회 의 간사는 회장 소속 자치단체의 관련 과장으로 한다.

제15조 (경비부담) 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일상 경비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②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그 때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16조 (결의사항의 처리) ①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조정요구) ① 협의회에 상정된 안전으로서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위원 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계 위원 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장이 조정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위원이 직접 조정요청을 할 수 있다.

제18조 (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19조 (보칙) 협의회 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1997. .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